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·매점 및
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2015년 12월 30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·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·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·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및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)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, 한부모 가족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3.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“신문판매대 등”이라 한다)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㎡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제3조 중 “서대문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”으로 하고 “설치계약”을 “설치허가 또는 위탁”으로 하며, “구보나 반상회보 등”을 “구보”로 하고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1호 중 “설치계약”을 “설치허가 또는 위탁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5조제1항 중 “장이”를 “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”로 “의한 계약”을 “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”으로 “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”를 “계약할 수 있으며”로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 계약”을 “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 계약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업의 의무)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 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한 사람 중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(계약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직계 비속,

직계비속의 배우자)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중 “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이면 과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계약 우선순위(제5조 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	한부모 가족	독립유공자·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 1~2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장애인
2	장애등급 3~4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3	장애등급 5~6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4					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자

※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

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2.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
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4.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등으로 결정

[별지 제1호서식]

<input type="checkbox"/> 신문·복권판매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음료용 자동판매기				
<h3>설치허가(위탁계약)신청서</h3>				
신 청 인	성명	생년월일		전화번호
	주소			세대원수 (신청인 포함)
	신청구분 (해당란에√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65세이상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	장애등급 (장애인인경우)
	수급자 대상여부 (해당란에√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가 아님		세대원중 장애인 유무여부
<p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문·복권판매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음료용 자동판매기				
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(인) </div>				
접수번호	제 호			
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기관장 (시설의 장) (인) </div>				
첨부서류 :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독립유공자증 사본,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				